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노인의학 신설〉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71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2
------------------	---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28.

(3) 회 부 일 : 2025. 12.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바, 노인은 급성 질환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따라 건강상태 관찰, 생활방식 지도·개선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길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 환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노인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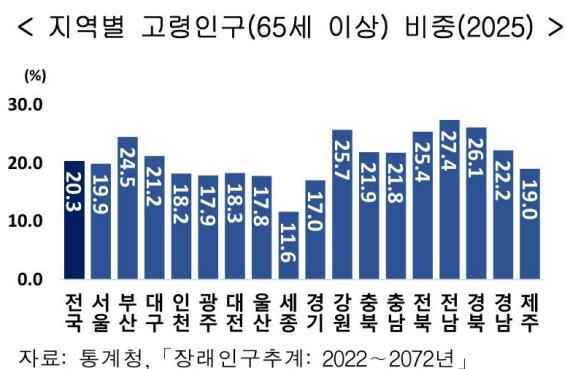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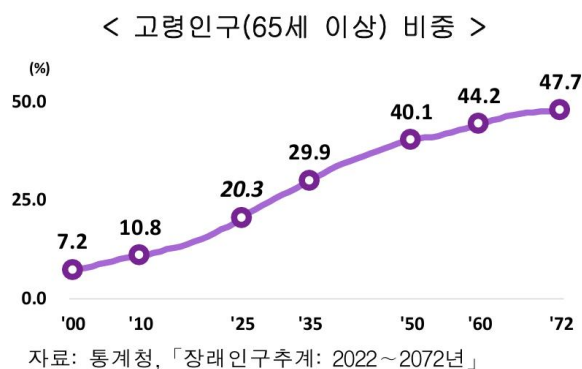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II. 검토 의견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분야로서 노인의학 분야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u>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u> 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 ----- ----- <u>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천만명을 초과하여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렀음. 향후로도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36년에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¹⁾.



1)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 2025. 9. 29, p.22.

□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포괄적인 건강진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노인 환자는 다제복용(polypharmacy),²⁾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 등 일반 성인 환자와는 다른 의학적 특성을 보이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됨.

□ 이에 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노인의학"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노인 전문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³⁾

개정안과 같이 전문인력 양성 분야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노인의학과 같은 특정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노인의학과 같은 특정 분야 의료의 전문인력 양성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의료 관련 자격 신설이나 교육 과정 개설은 의료 관련 법령의

2) 다제복용(다약제복용이라고도 함)의 기준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4개 또는 5개 이상의 의약품 복용을 의미함.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비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의료인력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현행 의료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 나아가 이 법은 인구 고령화 뿐만 아니라 저출산에도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이고 저출산이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분야는 매우 다양하므로, 그 중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노인의학 관련 교육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의료인 중앙회⁶⁾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노인의학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권고⁷⁾하고 있음.

4) 참고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진료과목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음(규칙 제41조제1항)

의료기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종합병원	아래 ‘병원·정신병원이나 의원’,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과 동일
병원·정신병원이나 의원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요양병원	위 ‘병원·정신병원이나 의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과 동일

5) 가정의학과에서 수련과정 중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관련 지식, 노인 환자 진료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교육

6)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사협회 등

7) 「의료인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노인의학 관련 내용 추가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노인의학 등’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은 「의료법」상 ‘의료인’을 지칭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규정하기보다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500